

춘천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49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양어진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2013. 12. 31.자 2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5. 2.자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7. 31.자 24,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와 C와 사이의 2013. 10. 17.자 16,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와 D

사이의 2013. 10. 19.자 14,000,000원의 증여계약, 2013. 10. 31.자 11,7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2009. 9.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하였고, B의 대표이사 C, C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D,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2013. 11. 1.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2. 23. 중소기업은행에 B의 채무 146,091,973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4. ‘B, C, D, E은 위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46,386원 및 그중 145,046,043원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4. 1. 13.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3가단17257).

다. B은 2013. 9. 12. 사업장인 춘천시 F 공장용지 3,295㎡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G에게 매매대금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매수인 G의 계좌에서 2013. 12. 31. 25,000,000원을, G의 남편이자 G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의 계좌에서 2014. 5. 2.

70,000,000원, 2014. 7. 31. 24,000,000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B의 계좌가 아닌 B의 대표이사 C의 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B의 폐업사실을 알게 된 2013. 11. 27. 또는 피고의 계좌내역을 발급받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을 알게 된 2015. 2. 17. 이후 제척기간 1년이 지나 2018. 5. 8.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8632 판결 등 참조).

갑 제2, 6,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6. 및 2018. 4. 16. C의 파산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B의 폐업사실증명원과 계좌거래내역 조회서를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8.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B의 사해행위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B이 유일한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공장을 G에게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2013. 12. 31.부터 2014. 7. 31.까지 B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금 145,046,043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80,669,000원, J은행에 대한 채무 41,112,000원, K은행에 대한 채무 97,5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84,244,000원, L에 대한 채무 35,855,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23,525,000원, 춘천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 100,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7,574,000원, 합계 815,525,043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소극재산만 있는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B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2013. 12. 31. 25,000,000원, 2014. 5. 2. 70,000,000원, 2014. 7. 31. 24,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사해의사

(가) 피고의 주장

B의 계좌가 압류되어 이 사건 공장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아 B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9, 10,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를 운영하던 C의 딸로서 B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는 C의 이 법원 2014하면55 면책사건에서 2014. 8. 8. 춘천시 M 소재 아파트 시가 199,000,000원 상당을 매수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사채업자 I(이 사건 공장 매수인 G의 남편)로부터 2014. 5. 2. 70,000,000원, 2014. 7. 31. 32,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는 점, ③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C와 2013. 10. 15.부터 2014. 4. 15.까지 체결한 총 22,203,200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가 B와 2013. 12. 31.부터 2014. 8. 3.까지 체결한 109,1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1,303,2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3902),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 2017. 9. 26.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이 2017. 10. 25. 확정되었고, 피고가 2017. 12. 27. 신용보증기금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 점, ④ C가 B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명목의 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이 사건 공장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원상회복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장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피고에게 2013. 12. 31. 25,000,000원, 2014. 5. 2. 70,000,000원, 2014. 7. 31. 24,000,000원을 각 지급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게 2017. 12. 27.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원상회복을 마쳤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4,000,000원(= 25,000,000원 + 70,000,000원 + 24,000,00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 D의 사해행위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 D과 피고의 증여계약일인 2013. 10.경 이후 발생하였으나, B이 2009. 9. 10. 중소기업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11. 1. 폐업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인 2013. 12. 23. 원고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 D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C, D의 무자력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10.경 C, D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C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금 145,046,043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444,000원, J은행에 대한 채무 5,356,000원, K은행에 대한 채무 137,149,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84,244,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23,525,000원, 합계 600,764,043원인 사실, D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원금 145,046,043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9,594,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23,526,000원, 합계 278,166,04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10.경 C,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3) C, D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3. 10. 17. 딸인 피고에게

1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이 2013. 10. 18. D에게 14,000,000원, 2013. 10. 31.

11,700,000을 각 송금하여 D이 딸인 피고에게 2013. 10. 19. 14,000,000원, 2013. 10. 31.

11,7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친 C, 모친 D에게 빌려주었던 사업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부모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하였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C, D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18, 19, 2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D, 피고의 계좌에서 2012년과 2013년경 상호 빈번하게 송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피고와 D의 계좌를 B의 사업 관련 계좌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C, D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 D이 피고에게 2013. 10.경 현금 41,700,000원을 증여하였다거나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이나